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박마루 의원입니다.

-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63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2017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8.4명으로 183개 조사 대상국 중 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하여 14년째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자살자 수는 2014년 2467명,
2015년 2301명, 2016년 2261명으로 자살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을 공공역역과 민간영역에서 1명씩 구성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살예방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시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자살자 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살예방시행계획에 자살자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및 사회경제적 지원을 포함하여 가족원의 사망으로 인한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